

광주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나625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피고, 항소인 B중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충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3. 26.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50341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2. 17. 접수 제47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중중’을 ‘종중’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2를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던 피고가 종중원인 F 등 4명에게 제1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종중 재산이라는 취지의 종래 주장을 강조하였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에 포함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① 피고는 피고 소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 E이 종손 K에게 위 지분 중 1/4(이 사건 부동산 중 1/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위 E을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575 판결(갑 제4호증, 이하 ‘관련 제1심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노3019 판결(갑 제8호증,

이하 ‘관련 형사항소심 사건’이라 한다)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종중의 선산이라는 취지의 O, V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을 제11, 1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심이 적절히 실시한 바와 같이 O과 그 형제인 M이 관련 제1심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피고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산지기 W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임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W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W은 관련 형사항소심 사건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갑 제9호증),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W이 관련 형사항소심 사건에서 X 문중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W이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언급한 X 문중이 피고를 의미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④ 피고는 2005년도 내지 2019년도 정기과세내역서(을 제12호증의1), 2017년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을 제12호증의2)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도 내지 2016년도 재산세는 Q문중에 부과되었고,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년도 이후의 재산세부터 비로소 피고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1 내지 을 제16호증의2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아도, Q문중과 피고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